

「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구미시 강동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
- 추진근거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~ 제19조의5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조 ~ 제2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」 제5조
 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 ~ 제22조의2

- 위탁사무: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
- 시설개요
 - 시설명: 강동국민체육센터
 - 소재지: 구미시 인의동 1022
 - 규모: 지하 1층, 지상 2층, 연면적 3,255m²
 - 층별시설

층 별	면적(m ²)	주 요 시 설	비 고
지하 1층	644.19	전기실, 기계실, 감시실	
지상 1층	1,760.57	수영장(25mX6Lane), 카페	주차 70면
지상 2층	850.86	사무실, 헬스장, GX실	

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
-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(구미시설공단)
- 소요예산: 1,826,875천 원(2024년)

(단위:천 원)

구분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세 입	-	522,208	522,208	522,208	522,208	2,088,832
	소 계(a)	-	522,208	522,208	522,208	522,208	2,088,832
세출	노 무 비	957,383	986,104	1,015,687	1,046,158	1,077,543	5,082,874
	경 비	609,406	627,688	646,518	665,914	685,891	3,235,417
	일반관리비	94,007	96,828	99,732	102,724	105,806	499,097
	부 가 세	166,080	171,062	176,194	181,480	186,924	881,739
	소 계(b)	1,826,875	1,881,681	1,938,132	1,996,276	2,056,164	9,699,128
합계(a-b)		△1,826,875	△1,359,473	△1,415,924	△1,474,068	△1,533,956	△7,610,296

※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 산출 결과('23. 3.)

※ 물가반영률 연 3%적용

4. 참고사항

○ 강동국민체육센터 사진대지

□ 위 치 도



□ 조 감 도



○ 위탁비용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/년)

구 분		강동국민체육센터	비 고
인 건 비	직 접 인 건 비	957,383	
	소 계	957,383	
경 비	보 험 료	99,014	
	복 리 후 생 비	10,510	
	수 도 광 열 비	65,906	
	전 력 비	144,441	
	연 료 비	162,000	
	수 리 수 선 비	80,333	
	소 모 품 비	29,621	
	지 급 수 수 료	17,582	
	소 계	609,406	
순 운 영 비		1,566,788	
일 반 관 리 비		94,007	순운영비의 6%
운 영 비 합 계		1,660,796	
부 가 가 치 세		166,080	운영비의 10%
연 간 위 탁 비 용		1,826,875	운영비 + 부가세

※ 2023년 운영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, 수입은 2022년 이용인원 기준으로 산정

※ 코로나-19이전 이용인원 기준 수지비율은 66.1%(올림픽기념생활관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2024년 1월 개관 예정인 강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한 공공위탁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시설규모에 수영장, 헬스장, GX실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설 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점검과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한편, 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은 ‘민간’이 아닌 ‘공공기관’에 해당하고, 현재 구미시는 공공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례 근거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동의를 받아오고 있음. 향후 집행기관 및 관련 소관부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의회 동의 절차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